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48

발의연월일: 2025. 2. 18.

발 의 자:서삼석・위성곤・박홍배

정을호 • 이개호 • 박수현

김원이 • 이병진 • 신정훈

문대림 • 소병훈 • 문금주

전종덕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섬은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은 육지로의 이동 제약 등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국가는 별도 정주여건 개선없이 그에 대한 주민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함.
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여객선에 대한 정의와 국가의 책무로 섬 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나, 해당 법에 버스 및 철도 등 육상 교통에 비해 적용 조항은 부족할뿐이고 오히려 여객선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.

특히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, 현재까지 진척은 없음.

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 및 해상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·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여객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 게 섬 지역과 육지를 이동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 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섬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상대중 교통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대중 교통의 효율성 증진과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 섬지역의 주민의 해상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해양수산부장관은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항로를 지정·고시할 수 있고, 해당 항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국가와 지방지단체는 해상대중교통 이용객이 해상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여객터미널, 선착장 등에서 안전하게 승·하선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마. 해상대중교통운영자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

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(안 제7조).

- 바. 국가는 해상대중교통수단의 안전운행과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노후 선박의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과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- 사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상대중교통수단 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아.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수단 이용객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상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·예매하고 해상대중교통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
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섬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상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과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섬"이라 함은 만조(滿潮)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육 지와 연륙(連陸)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.
- 2. "해상대중교통"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해상대중교통수단 및 해상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어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육지 또는 섬과 「울릉도・흑산도 등 국토외곽 면섬 지원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"국토외곽 면섬" 사이를 부정기적으로 운항하여 다수의사람을 운송하는 해상교통체계를 말한다.
- 3. "해상대중교통수단"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.
 - 가. 「해운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

사업 및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

- 나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
- 4. "해상대중교통시설"이라 함은 여객터미널, 선착장, 도선장,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해상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.
- 5. "해상대중교통운영자"란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해상대 중교통시설을 경영·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해운법」,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상대중교통수단 또는 해상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 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
 - 나. 그 밖에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공영항로를 운항하는 기관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육성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해상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섬 지역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, 섬 지역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상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수립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대중

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 섬 지역의 주민의 해상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해상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
- 2. 해상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
- 3. 해상대중교통시수단 및 해상대중교통시설의 개선·확충에 관한 사항
- 4. 해상대중교통 이용정보의 제공 등 해상대중교통 정보화에 관한 사항
- 5. 적자 노선 해상대중교통수단 현황과 향후 운행계획에 관한 사항
- 6. 육상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
- 7.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항로 지정에 관한 사항
- 8.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
- 9. 그 밖에 해상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

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해상대중교통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해상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시기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공영항로의 지정·고시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항로(이하 "공영항로"라 한다)를 지정하여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할 수 있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영 기관은 공영항로 운영계획을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영항로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"공영항로운영기관"이라 한다)이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로의 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「해운법」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영항로운영기관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할 수 있다.
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영과 관련

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영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해당 섬 지역에 연륙교(連陸橋)가 설치된 경우
- 2.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항로에 대하여 사업 수요가 생긴 경우
- 3.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로 지정의 필요성 이 없게 된 경우
- ⑤ 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영항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
- 제6조(해상대중교통시설 축조 및 서비스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해상대중교통 이용객이 해상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 용하고 여객터미널, 선착장 등에서 안전하게 승·하선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해상대중교통시설의 축조 또는 관련 서비스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) ① 해상대중교통운영자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

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해상대중교통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교통약자 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해상대중교통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선박 건조자금 등의 지원) ① 국가는 해상대중교통수단의 안전 운행과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운 해하는 자에게 노후 선박의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과 친환경 선박으 로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,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운임과 요금의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상대중교통수단 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여객터미널 및 접안시설 등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객이 여객터미널과 기항지에서 안전하게 승· 하선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·장비·서비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

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및 도선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이 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해상대중교통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대중교통수단 이용객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상대 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·예매하고 해상대중교통과 관련한 정 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종합지원시스템(이 하 "종합지원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보고·검사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 등 소관부처의 장 또는 시 ·도지사는 해상대중교통운영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 등 소관부처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상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·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

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제13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상대중교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